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0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백승아·박해철·김문수

문정복 · 송옥주 · 진선미

김한규 · 김영호 · 정을호

김준혁 • 고민정 • 김성환

서영교 • 이기헌 • 정진욱

문금주 • 노종면 • 강준현

송재봉·윤종군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 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

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
	<u>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u>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 문서열람 등을 하게
	<u>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u>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
	사·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0
	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u>④</u> <u>제1항</u> 에 따라 조사·상담	<u>⑥</u> 제1항 및 제4항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생략)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 · 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 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 르지 아니한 보호자
- ② (현행과 같음)